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2

교육·보육·가족

01.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060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시행일: 2026년 3월

-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4~5세, 2027년 3~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02.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061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시행일: 2026년 3월

-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됩니다.
- 학교의 여러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사업 간 연계 및 지역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03.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06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을 확대합니다.

- 학부·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기준) 9구간 이하 → (개선) 전 구간
-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기준) 4구간 이하 → (개선) 6구간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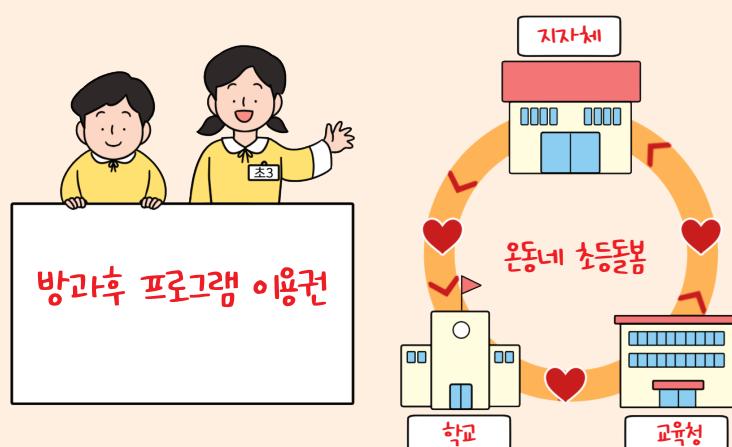
04.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063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시행일: 2026년 3월

-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학교 중심이었던 초등돌봄을 지자체-교육청(학교) 협력 체제인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보완합니다.



05. 성평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064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자격제 및 등록제는 2026년 4월 23일 예정)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250% 이하 가구)
- 영아돌봄수당 인상, 유아돌봄수당 신설로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2025년(요금 12,180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다자녀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75%	
나 75% ~ 120%	60%	40%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다 120% ~ 150%	30%	20%	
라 150% ~ 200%	15%	10%	
마 200% 초과	-	-	-

2026년(요금 12,790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80%	
나 75% ~ 120%	60%	50%	(다자녀) 10%
다 120% ~ 150%	30%	25%	(인구감소 지역) 5%
라 150% ~ 250%	15%	10%	
마 250% 초과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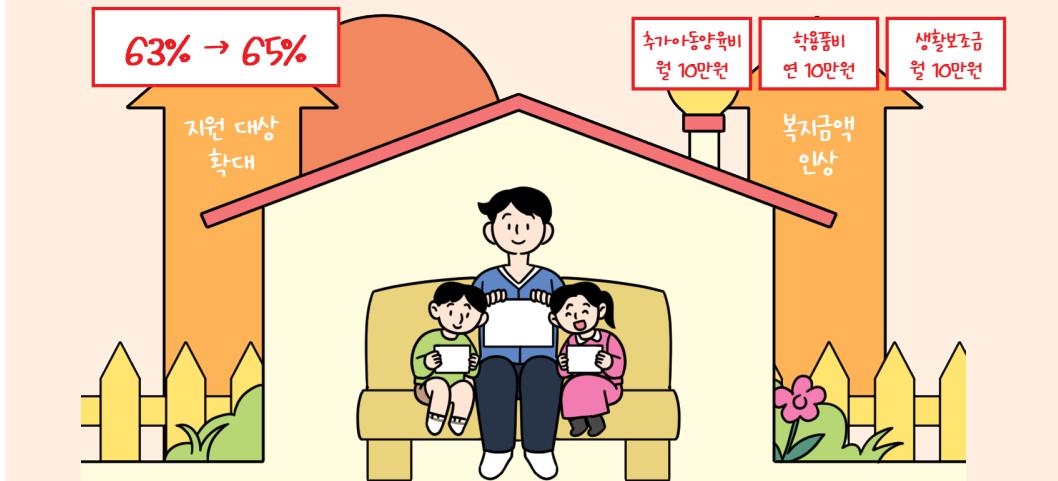
06. 성평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06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이 기존 소득기준 63%에서 65%로 확대됩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는 월 10만원, 학용품비 연 10만원으로 복지급여도 인상됩니다.
- 다자녀 가구 기준은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07. 재외동포청

자세한 내용은 p.071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사업 시행

시행일: 2026년 3월

- 2026년부터 모국에 돌아온 동포 청년들의 학업·취업·정착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합니다.
- 국내에서 학업을 희망하는 동포 대학(원)생에게는 어학연수비, 등록금, 장학금을 제공하고, 취업·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직업훈련생에게는 취업교육·직업훈련과 초기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044-203-7217

2026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4~5세로 확대됩니다.

- ▶ 정부에서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약 및 국정과제(101-3번) :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에 4~5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평균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립유치원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
- ▶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유치원·어린이집에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을 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하반기부터 5세 교육비·보육료 학부모 부담이 경감됩니다 (2025. 7. 29.)**”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추진배경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주요내용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유아교육비, 방과후과정비, 기타필요경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 무상 지원
※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 (2025년) 5세 → (2026년) 4~5세

시행일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 044-203-6525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 ▶ 그간 학교는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업별·분절적 지원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 ▶ 이에, 2026년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학생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학교의 여러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 간 연계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예시〉 기초학력 부족, 심리·정서 불안 등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학생에게 학력향상 멘토링(학교), 종합심리검사 지원(Wee센터) 등 맞춤형 지원

- ▶ 아울러, 학교의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다종적 어려움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지역별 학생지원 기관 현황 등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www.kedi.re.kr/studentsupport)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추진배경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별 특성·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지원 필요

주요내용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이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의 특성·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내 지원사업, 교육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통합지원 실시

시행일

2026년 3월(「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044-203-6268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재학 중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을 확대합니다.

- ▶ 2026년부터 등록금 대출은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부생·대학원생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또한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로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구분	기준	개선
학부생	등록금 대출	9구간 이하
	생활비 대출	8구간 이하
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4구간 이하
	생활비 대출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추진배경

재학 중 상환 부담이 없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을 확대하여 대학(원)생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

주요내용

- 학부생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 (기준) 9구간 이하 → (개선) 전국구간(10구간 이하)
- 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 (기준) 4구간 이하 → (개선) 전국구간(10구간 이하)
-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 : (기준) 4구간 이하 → (개선) 6구간 이하

시행일

2026년 1월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 044-203-6607

2026학년도부터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3학생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바우처 등)’을 지급하여 수강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연중 한 과목 이상 무상 수강 가능한 수준, 시도별로 지원 금액·방식은 일부 다를 수 있음

- ▶ 학생들이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및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강사 검증을 강화합니다.

그간 학교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초등돌봄을 지자체-교육청(학교) 협력 돌봄·교육 체제인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보완·발전시켜, 더욱 질 높은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 학교에서는 충분히 제공되기 어려웠던 저녁, 주말, 일시돌봄 등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돌봄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추진배경

정규수업 외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제공하여 각자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반전 계기 마련 필요

주요내용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희망하는 초3에게 지원
- 온동네 초등돌봄 생태계 구축: 학교 중심 방식에서 온 사회가 협력 방식으로 개선
※ 초1·2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계속 지원

시행일

2026년 3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75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 ▶ 정부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비율이 높아져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5년(요금 12,180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다자녀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75%
나	75% ~ 120%	60%	40%
다	120% ~ 150%	30%	20%
라	150% ~ 200%	15%	10%
마	200% 초과	-	-

2026년(요금 12,790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80%
나	75% ~ 120%	60%	50%
다	120% ~ 150%	30%	25%
라	150% ~ 250%	15%	10%
마	250% 초과	-	-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250% 이하 가구로 확대

- ▶ 영아돌봄수당을 인상(시간당 1,500원 → 2,000원)하고, 유아돌봄수당을 신설(시간당 1,000원)하는 등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새로 시행됩니다.

- ▶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발급하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 민간 아이돌봄기관은 일정 기준을 갖춘 뒤 시·군·구에 자율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추진배경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주요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
- 영아돌봄수당(시간 당 1,500원→2,000원) 인상, 유아돌봄수당(시간 당 1,000원) 신설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시행일

2026년 1월 1일(자격제 및 등록제는 2026년 4월 23일 예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02-2100-635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월 5~10만원에서 월 10만원, 학용품비를 연 9.3만원에서 연 10만원, 생활보조금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한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추진배경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훌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 소득기준: (2025.) 중위소득 63% 이하 → (2026.) 65% 이하
 - 추가아동양육비: (2025.) 월 5~10만원 → (2026.) 월 10만원
 - 학용품비: (2025.) 연 9.3만원 → (2026.) 연 10만원
-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 (2025.) 자녀 3명 이상 → (2026.) 자녀 2명 이상
 - * 다자녀 가구 혜택 : 월 4.17% 소득환산 적용 자동차의 요건이 ‘2,000cc 미만 자동차’이나
다자녀 가구일 경우 ‘2,500cc 미만 7인승 자동차’까지 완화·적용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시행

성평등가족부 성형평성기획과

☎ 02-2100-6144

2026년부터 청년세대의 관점을 반영한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성별 인식격차 완화 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 성불평등 관련 의제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공론화 및 숙의를 거쳐 정책대안을 도출·제안할 수 있는 ‘청년공존·공감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학교·채용·직장생활 등 영역별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 아이디어 제안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시행

추진배경

청년이 성별갈등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 온라인 밖 청년 남녀 간 상호 이해·소통 계기 확대

주요내용

- (청년공존·공감네트워크) 성불평등 의제에 대해 청년세대가 직접 공론화 및 숙의를 통해 정책대안을 도출·제안하는 논의의 장 운영
- (성별불평등 개선) 대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정책 아이디어 제안제도 운영

시행일

2026년 1월(예정)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 강화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 02-2100-6162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시스템이 고도화되는 등 피해 지원체계가 강화됩니다.

- ▶ 2025년 고도화 작업을 통해 개선된 삭제지원시스템*과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운영으로 지원 효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AI 기반 딥페이크 이미지 탐지·추적, 삭제요청 자동화 등 시스템 고도화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유인 행위 및 성착취물 자동 탐지·신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 강화

추진배경

생성형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빠르게 진화·확산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 효율적 대응 요구

주요내용

- (인력증원)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인력 증원
* (2025.) 중앙 33명, 지역 15개소(개소당 2명) → (2026.) 중앙 43명, 지역 16개소(개소당 3명)
- (센터 간 협업) 삭제지원 등 지원 현황 실시간 공유를 위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 양방향 온라인 협업 게시판 운영
- (시스템 고도화) 개선된 삭제지원시스템과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운영

시행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2026년 4월 운영 예정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02-2100-6448, 6449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합니다.

- ▶ 2026년부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퇴소한 아동·청소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 ▶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학업, 진학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착취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추진배경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에 기여

주요내용

-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청소년 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보호받은 후 퇴소한 자
- (지원내용) 월 50만원 현금 지급(최장 12개월)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주거·법률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8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자립·주거·법률 지원이 강화됩니다.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추정자 포함)에게 진단검사비 30만원(1인당)을 신규 지원합니다.
*지원인원 : 300명
- ▶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운영을 326호에서 346호까지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을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 저소득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2025.) 4.92억원 → (2026.) 6.32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주거·법률지원 강화

추진배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 준비 지원 강화

주요내용

- 시설입소 경계선지능 한부모가족 진단검사비 지원
- (신규) 진단검사비 1인당 30만원, 총 300명분 지원
-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2025.) 326호, 보증금 1,100만원까지 → (2026.) 346호, 보증금 1,200만원까지
- 저소득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 확대
- (2025.) 4.92억원 → (2026.) 6.32억원 (1.4억원 증)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 02-2100-6278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LH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025년 9월부터 LH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시설 최소이용기간(2년) 없이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절차가 복잡하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플러스(apply.lh.or.kr) 누리집
- ▶ LH공공임대주택 계약자를 위한 입주지원금, 임대보증금, 생활안정 패키지, 주택청약저축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

추진배경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퇴소청소년에게 LH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지원요건 완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우선공급하는 LH공공임대주택 종 건설·매입·전세임대 유형의 지원요건에서 시설 최소 이용기간(2년) 삭제
- (신청절차 간소화) 청소년이 원하는 공공임대주택(매입, 전세, 건설)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플러스(apply.lh.or.kr) 기능개선
- (생활지원) 민관협업을 통해 LH공공임대주택 계약자를 위한 입주지원금, 임대보증금, 생활안정 패키지, 주택청약저축 등 지원

시행일

2025년 9월 23일(계속)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사업 시행

재외동포청 국내동포지원TF팀 | ☎ 032-585-3280

모국에 귀환한 동포 청년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학업과 취업·정착 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 ▶ 국내 학업을 희망하는 동포 대학(원)생에게는 △어학연수비 △등록금 △장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 ▶ 국내 취업·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직업훈련생에게는 △취업교육·직업훈련 △초기정착금을 제공합니다.

2026년도 국내 대학(원)에 수학 예정인 국내·외 동포가 대상이며, 코리안넷(www.korean.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재외동포청 누리집>보도자료>“2026년 재외동포청 예산안 1,092억원 편성”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사업

추진배경

동포청년 인재 국내 유치 및 정착지원을 통한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반자 육성

주요내용

- 동포 대학(원)생 대상 ▲어학연수비 ▲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국내 학업 지원
- 동포 직업훈련생 대상 ▲취업 교육·훈련 ▲초기정착금 등 국내 취업·정착 지원

시행일

2026년 3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3

보건·복지·고용

01. 국가보훈부

자세한 내용은 p.079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시행일: 2026년 3월 17일

-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8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매월 1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 (변경)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도 2026년부터 2025년 대비 5만원 인상된 15만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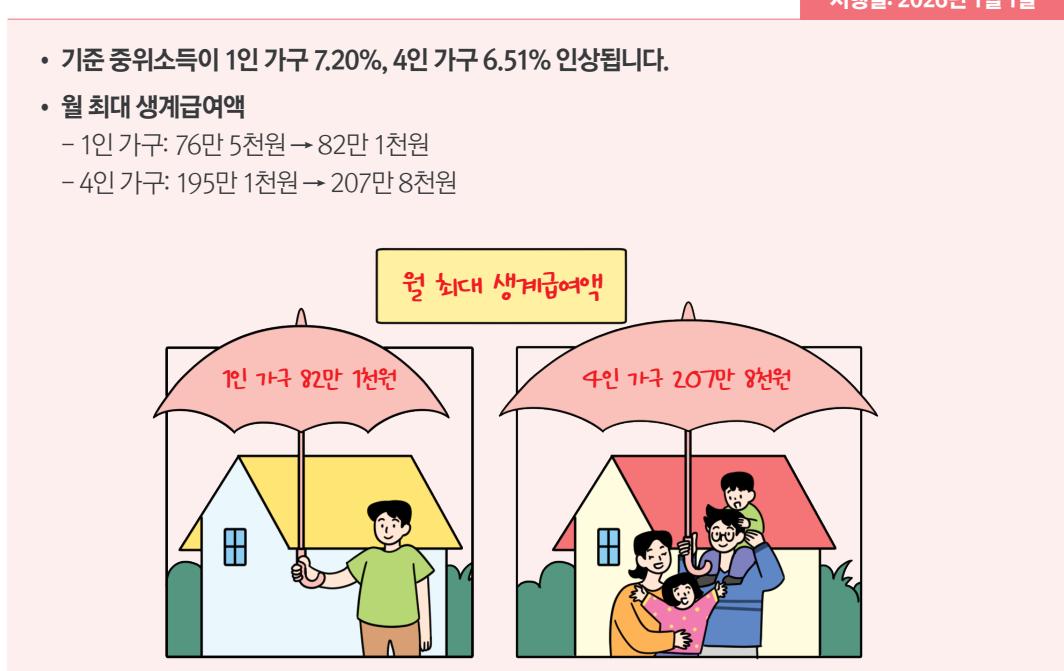
02.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082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최저생활 보장 강화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인상됩니다.
- 월 최대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76만 5천원 → 82만 1천원
 - 4인 가구: 195만 1천원 → 207만 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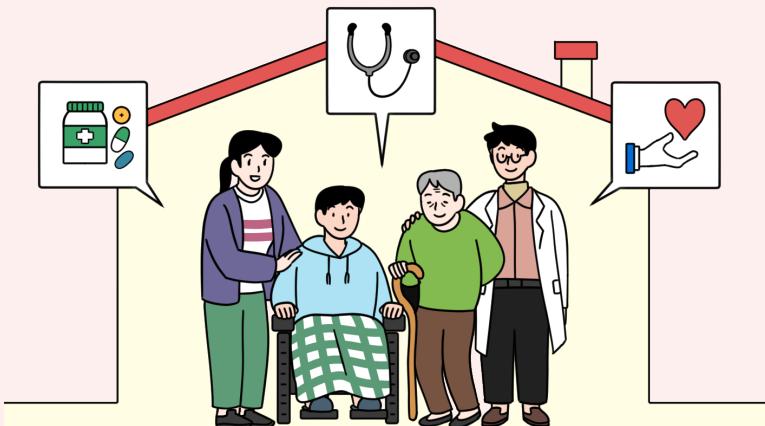
03.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083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영위가 가능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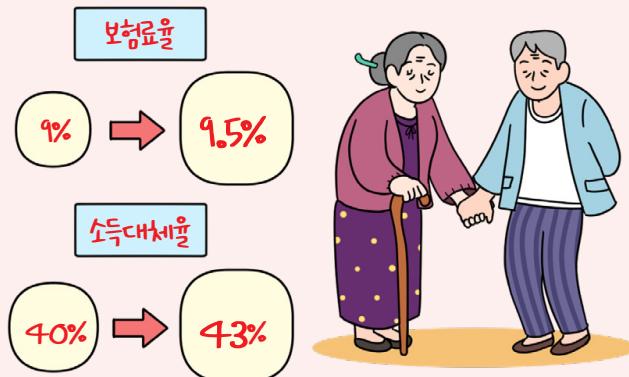
04.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084

국민연금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명목소득대체율이 인상됩니다.
 - (기존) 보험료율 9%, 명목소득대체율 40%
 - (변경) 보험료율 9.5%, 명목소득대체율 43%(일시 인상)



05.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085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확대됩니다.

- 군 복무: 6개월 → 12개월
- 출산: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이상부터 18개월 추가 지원(50개월 상한) → 첫째·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이상부터 18개월 추가 지원(상한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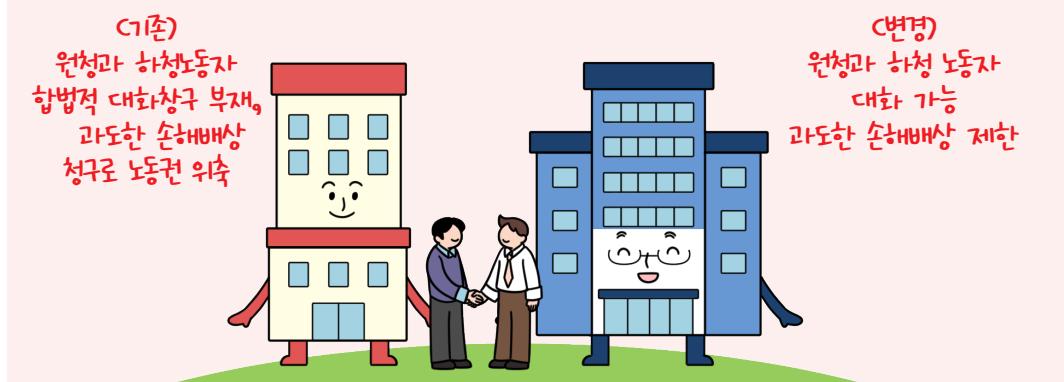
06.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09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시행일: 2026년 3월 10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됩니다.
-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도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되어 교섭의무를 부담합니다.
- 파업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각자의 귀책과 기여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합리적 책임만 부담하도록 합니다.



03.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091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시행일: 2026년 1월

- 상시근로자 수 50인~100인 미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최장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중증남성 35만원 / 중증여성 45만원



04.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092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 평가 내용·범위가 동일한 7개 일학습병행자격 종목에 대해, 해당 일학습병행 합격자를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 합격자로 인정합니다.
- 일학습병행 종목의 외부평가에 응시해 필수능력단위를 100% 합격하면, 일학습병행 자격 및 기능사·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을 동시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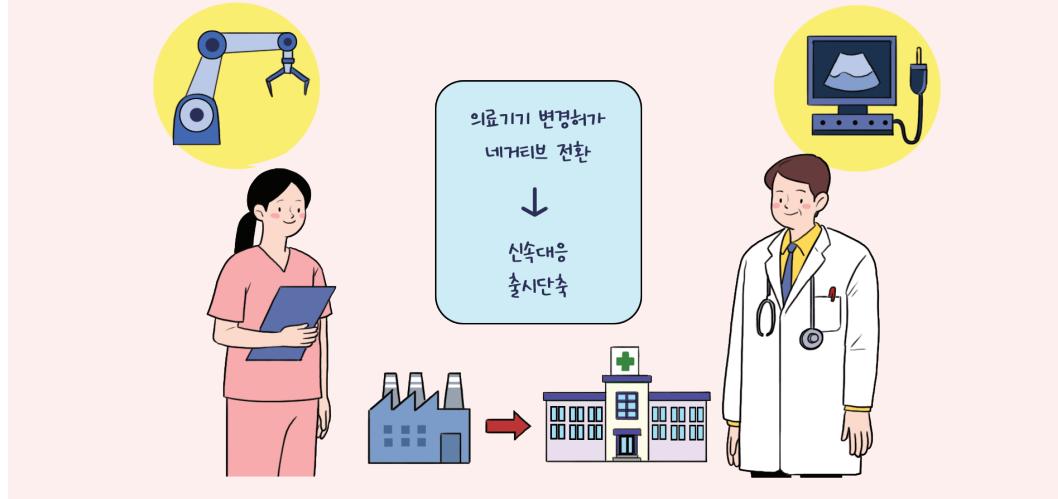
09.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21

의료기기 변경허가 방식 전환

시행일: 2026년 12월

- 의료기기 변경허가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만 사전 변경허가를 받고, 그 외 변경은 기업이 자발적 평가·관리합니다.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044-202-5412

이제 참전유공자 배우자께서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그간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 등*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유족
- ▶ 그러나 참전유공자법을 개정(2025.9.16.)하여 2026년 3월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이상 중위소득 50%이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2026년 생계지원금은 2025년 대비 5만원 인상된 15만원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께서는 2026년 3월 17일 이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보도자료>“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길 열려”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추진배경

참전유공자의 사망한 이후 보훈지원이 중단되면서 홀로 남겨진 고령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 발생

주요내용

- (지급대상)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 (지급내용) 월 15만원

시행일

2026년 3월 17일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수급요건 완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044-202-5420

**재해부상군경(사망한 경우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부양가족수당 수급을 위한
상이등급 요건이 '상이 6급 이상'에서 '상이 7급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 2012년 7월 1일 보훈보상대상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이후 처음으로 수급요건이 완화되어 약 3,860여명이 새롭게 부양가족수당을 수급하게 됩니다.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수급요건 완화

추진배경

가족을 부양하는 상이등급 7급 재해부상군경에 대한 지원 강화

주요내용

재해부상군경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지급요건 중 상이등급 기준 완화 (상이등급 6급 → 7급)

시행일

2026년 1월 1일(2026년 1월 보훈급여금 지급일인 1. 15.부터 지급)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 044-202-5423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49개소에서 140개소로 대폭 확대합니다.

* [기존 49곳] 상급종합병원(47), 국군수도·경찰병원 [확대 140곳] 기존(49) + 보훈병원(5), 종합병원급 위탁병원(86)

- ▶ 기존에는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감이 컸지만, 이제는 거주지 근처의 위탁병원에서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해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체검사 단계를 건너뛰고 신속하게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어, 유공자 등록에 걸리는 소요기간이 줄어듭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보도자료>“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확대로 신체검사 접근성 강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활성화

추진배경

국가유공자 대상자의 신체검사 접근성 강화 및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활용 확대 추진

주요내용

- 상급종합병원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뿐만 아니라 보훈병원과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에서도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49곳 → 140곳)
-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발급 가능, 제출 시 신체검사 생략으로 민원 편의 제고 및 등록소요기간 단축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최저생활 보장 강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2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인상되어 국민의 복지 기준선이 높아집니다.

*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므로,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적용한 월 선정기준액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 ▶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200만원을 최초로 넘어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 1인가구 월 최대 생계급여액 ('25년) 76만 5천원 → ('26년) 82만 1천원

4인가구 월 최대 생계급여액 ('25년) 195만 1천원 → ('26년) 207만 8천원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최저생활 보장 강화

추진배경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국정과제 77)

주요내용

- (기준 중위소득) 2026년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인상
 - (1인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82만 1천원 수급 가능(5만 5천원 인상)
 - (4인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207만 8천원 수급 가능(12만 7천원 인상)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 044-202-3033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4. 3. 공포, 26. 3. 시행)
시행으로,

- ▶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이 대상자이며,**

- ▶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 경계에 있는 노인 등 국민이 복지를 넘어 의료·돌봄까지
누리며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 개요

추진배경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주요내용

- (대상자)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지원절차) ①신청 → ②조사·종합판정 → ③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④통합지원
서비스 연계 → ⑤모니터링
- (지원내용) 보건의료(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가사·이동·식사 지원 등),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01

국민연금법 개정안(25. 4. 공포, 26. 1. 시행)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13%)되고, 명목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됩니다.

- ▶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

추진배경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강화 추진

주요내용

- 보험료율 및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2025년 41.5%, 2028년 40% 도달 예정)
- (개정) 보험료율 13%(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소득대체율 43%(2026년~)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 044-202-3631

군 복무, 출산이라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 ▶ (군 복무 크레딧) 추가 산입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
인정기간	6개월	최대 12개월*

*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

* 2026. 1. 1. 이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 ▶ (출산크레딧)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 규정은 폐지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
첫째	-	12개월
둘째	12개월	12개월
셋째 이상	1명당 18개월	1명당 18개월
상한	50개월	폐지

* 2026. 1. 1. 이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추진배경

사회적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주요내용

- 출산·군 복무크레딧 확대
 -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입기간을 6개월 → 실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
 - (출산크레딧)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이상부터 18개월 추가 지원(50개월 상한)
 - 첫째·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이상부터 18개월 추가 지원(상한 폐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8

2026년부터 국민의 건강 보장권 향상을 위해 폐기능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신규 도입됩니다.

- ▶ 2026년 1월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56세, 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 ▶ 향후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폐기능검사 국가검진 도입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추진배경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조기발견 필요성 제기

*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로 저조

주요내용

2026년 1월부터 56세, 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 실시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위기아동청소년법」 시행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 044-202-3702, 3703

**2026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족돌봄,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시작됩니다.**

- ▶ (전담 지원체계 구축)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족돌봄, 고립은둔 아동·청년이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지원기관이 지정됩니다.
- ▶ (조기 발굴체계 도입) 초중고 학교 선생님 등 위기아동·청년과 밀접한 종사자들과 전담 지원기관 간 상시 발굴·지원 연계 체계가 마련됩니다.
- ▶ (위기아동·청년 지원 강화) 전담 지원기관에서 일상회복 서비스 등 욕구에 따른 밀착 사례관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최초의 공적 전담
지원체계 마련 추진

위기아동청소년법 시행

추진배경

위기아동·청년 체계적 지원을 통해 본인의 자립과 성장 도모

주요내용

- 위기아동·청년 지원 근거 마련
- (전담조직 지정·위탁) 위기아동·청년을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지정·위탁
- (조기 발굴체계 도입) 초·중·고 학교 선생님 등 위기아동·청년과 밀접한 종사자들은 본연의 업무 수행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전담조직으로 연계
- (맞춤형 지원 강화)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 욕구와 필요에 따른 밀착 사례관리 지원 제공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행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 044-202-3261

2026년부터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방문하면 먹거리·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운영합니다.

- ▶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 징후가 보이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과 연계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 ▶ 2025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26년 5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전국에 150여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숨은 위기가구를 발굴해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그냥드림 시범사업 시행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 개요

추진배경

국민 먹거리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 (지원대상)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 (지원물품) 1인당 3~5개 품목 기본 먹거리·생필품(2만원 한도)
- (지원장소)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푸드뱅크 및 마켓 등에 코너 설치
- (이용절차) 처음 방문시 그냥드림 → 2차 이용시 의무 상담 및 복지연계

시행일

(시범사업) 2025년 12월 1일, (본사업) 2026년 5월 1일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044-201-6962

그간 기초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했으나 2025년 11월 21일부터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여 지원합니다.

- ▶ 자녀가 19세 미만이며 2자녀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에 지원하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향후에도 계속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 2025년 말까지 신청했던 가구는 2026년 5월말까지 사용하면 되고, 2026년 사업 신청은 2026년 6월경 받을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지급

추진배경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는 가구수가 많아 에너지비용 부담에 더욱 취약함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시 우선 고려 필요

주요내용

- (지원내용) 가구 당 평균 36.7만원*, 사용기간은 2026년 5월까지
*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 (지원대상) 기초수급가구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 2명 이상 포함 가구
- (지원가구) 최대 2만 가구

시행일

(다자녀 가구 추가) 2025년 11월 21일부터 신청 접수·발급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044-202-7609

2025년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하청 노동자는 원청과 대화를 하기 어려웠으나,
 - 앞으로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 개정법 시행으로 개별 조합원은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위와 정도 및 손해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격차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보도자료>“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추진배경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실질적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해소

주요내용

-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배상의무자별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에 따라 형평에 맞게 개별적으로 책임비율을 결정

시행일

2026년 3월 10일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5

2026년 1월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사업주의 점진적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에 지원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중증장애인부터 지원).
- ▶ 지원 금액: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인원에 대하여 최장 1년간 지급

구분	중증남성	중증여성
월별 지급단가	35만원	45만원

* 단,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만 포함)의 60%를 비교, 낮은 금액 지급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추진배경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 등 점진적 고용 개선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

주요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최장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제외
- (지원수준) 증가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45만원 지급

시행일

2026년 1월

* 지급시스템 개발 일정으로 신청시기는 별도 공고 예정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309

2026년 1월 1일부터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을 연계(7개 종목 간)하여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합니다.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합격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자격

- ▶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관련 유사 종목*의 기능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추가 취득을 위해 중복으로 학습하는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자격	국가기술자격(과정개발자격)
냉동공조설치_L2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떡제조_L2	떡제조기능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시각디자인_L3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과_L2	제과기능사
산업용크레인조종_L2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건설용크레인조종_L2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취득 연계

추진배경

일학습병행자격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에서 유사 동등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주요내용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평가내용·범위가 동일한 일학습병행자격 7개 종목 합격자를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 합격자로 인정
- 일학습병행 관련 종목의 외부평가 응시 후 필수능력단위 100% 합격시 일학습병행 자격 및 기능사·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동시 부여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3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합니다.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으로 단축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추진배경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 기회 확대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주요내용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임금 감소 없이 단축
-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

시행일

2026년 1월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7

육아휴직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지원 →

(개선) 육아휴직 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지원

** (현재)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후 50% 지급 →

(개선)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

- ▶ 또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현행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에서 20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현행 월 최대 20만원에서 20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보도·설명>보도자료>“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추진배경

육아휴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휴직자 복직 후 최대 1개월까지 연장
- 대체인력지원금 일부 사후지급 방식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 방식으로 개선
-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단가 인상

시행일

2026년 1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1,7045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출산·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액을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월 220만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10만원 → 2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607,650원 → 1,684,210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최초 2일분 160,760원 → 168,420원, 최초 1일분 80,380원 → 84,21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월 210만원 → 2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단축 전·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합니다.
*〈예시〉주 40시간, 월통상임금 220만원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단축 시: 220만원 × (30/40)=급여액 55만원
- ▶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매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250만원) × 단축비율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160만원) × 단축비율

일·가정 양립제도 급여 상한액 인상

추진배경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주요내용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을 월 220만원 기준으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250만원)×단축비율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160만원)×단축비율

시행일

2026년 1월 1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55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 시행

주요내용

- 2026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3

2026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을 통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 기존에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했으나, 2026년부터는 월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변경 내용

구분	현행	개선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월 60만원, 최대 6개월

고용24(www.work24.go.kr)>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확대

추진배경

저소득 참여자의 취업활동을 장려하고 구직활동 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인상 추진

주요내용

저소득 구직자(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가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2026년 1월 1월

* 2025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60만원 인상분 적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66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합니다.**

- ▶ 특히, 비수도권을 일반지역·우대지원·특별지원 3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합니다.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주요 개편내용

구분	2025년		2026년
유형	유형I	유형II	수도권
지원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비수도권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모든 업종
사업주 지원 (청년1인당)	1년간 720만원 (청년 근속 6·9·12개월 차에 월 60만원 기준으로 지급)		취업애로청년 1년간 720만원 (청년 근속 6·9·12개월 차에 월 60만원 기준으로 지급)
청년 지원	-	2년간 480만원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 2년간 480 / 600 / 720만원 (6·12·18·24개월 차 각 120 / 150 / 180만원)

개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추진배경

비수도권 청년 이탈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 청년
- 지원 수준
 -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

시행일

2026년 1월 1일(예정)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신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0, 7462

2026년부터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 ▶ 정부는 법정 정년 전 조기퇴직 경향 등 50대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 재취업 의지가 있는 중장년을 위해 경력설계→직업훈련·일경험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지원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직업훈련·일경험 수료 후 제조·운수창고업 등 일손부족 업종에 취업한 50+ 중장년에게 취업 후 6·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고용센터 및 고용24 통해 신청 가능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지원

추진배경

2024년 이후 2차 베이비부머 퇴직 본격화,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 52.9세, 50대 고용률 지속 하락추세 등 50대 고용여건 악화에 따라 이들의 재취업·장기근속을 유인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제조업 등 일손부족 업종에는 인력난 해소를 지원

주요내용

- (지원대상) 중장년 훈련 및 일경험을 수료한 50세 이상 중장년
 - *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중장년경력지원제
- (취업업종) 제조업·운수창고업
- (지원수준) 취업 후 6·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인원) 1,000명

시행일

2026년 1월 1일(6개월 근속일 기산 시점 기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0, 7463

2026년부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 2025년까지 정년 연장·폐지 또는 1년 이상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에는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해왔습니다.
- ▶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추진배경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중심으로 중장년 고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 개편 추진

주요내용

- (지방 우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 상향^{26년}
- (세대상생 고용 우대) 60세 이상 정년도래자 계속고용과 함께 세대간 상생
고용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중장기 과제}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044-202-7578, 7573

'26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재개됩니다.

- ▶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60만원(전환 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또는 40만원(그 외)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 주요 내용

구분	이전(2023년)	2026년 이후
지원 금액(月)	지급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전환 후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50만원60만원
지원 요건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30만원4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기업*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정규직으로 전환·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정규직 전환 후 월 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지급 기간	· 정규직 전환 이행 후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원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소개>정책안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 재개

추진배경

비정규직 규모 증가 및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지속에 따른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 강화 및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 필요

주요내용

- (지급대상) 30인 미만 기업
- (지원금액) 60만원(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또는 40만원(그 외)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추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91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특한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 ①기술인재+특별한+대한민국+명장의 약자로 기술이 특별한 명장 ②‘기특하다’라는 뜻으로 청소년·청년들이 대한민국명장 등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미

- ▶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청년(만34세 이하) 중 희망자가 (사)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에 신청하면 협회장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 ▶ 학생회원은 ①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입상자, ②국가기술자격 취득우수자(多수, 高수준), ③기술분야 특허나 발명 보유자 또는 ①~③ 상응하는 역량보유자가 직업계고등학교장의 추천과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로 추천되면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보도·설명>보도자료

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추진

추진배경

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명장(기특한명장)으로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

주요내용

- (심사·시상) 보유역량, 잠재력,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선정하여 숙련기술인의 날(매년 9월 9일) 행사를 통해 시상
 - * (기술회원) 기특한명장 증서 수여
 - * (학생회원) 기특한명장 증서 및 장관상 수여
- (우대사항) 대한민국 명장 선정 시 가점 부여, 대한민국명장과 1:1 멘토-멘티제 운영 등
- (진로특강 참여) 기특한명장 인력풀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시스템에 등록하고, 각 학교에서 진로 특강 신청

시행일

2025년 12월부터 시행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7

산업현장에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이하 “혼합기 등”이라 한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혼합기 등은 시행일 이후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 2026년 6월 26일 당시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경우
 1. 2013. 3. 1. 전: 2026. 6. 26. ~ 2026. 12. 25.
 2. 2013. 3. 1. ~ 2023. 6. 26.: 2026. 6. 26. ~ 2027. 6. 25.
 3. 2023. 6. 27. ~ 2026. 6. 25.: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기준 6개월 이내
 - ▶ 혼합기 등의 안전검사는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현행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추진배경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단계에서 해당 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 확인 필요

주요내용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시행일

2026년 6월 26일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 044-202-8969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 ▶ 용접·용단 시 발생하는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용접방화포는 소방청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 ▶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발 → 소방용품 승인정보 → 소방용품 성능인증 승인정보(방염류/방화포)

개정된(2025. 9.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는 2026년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성능인증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화

추진배경

용접·용단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불티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중 하나인 용접방화포 사용기준 강화

주요내용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를 위해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를 사용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2026년 3월 2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 종료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 044-202-8971

MSDS 제도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 종료됩니다.

- ▶ 2021년 1월 16일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는 당시 이미 제조·수입 중이던 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2026년 1월 16일에는 1톤 미만 제조·수입 제품까지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 제조·수입량에 따른 유예기간: ▲1,000톤 이상: 2022. 1. 16.,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3. 1. 16.,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24. 1. 16., ▲1톤 이상 10톤 미만: 2025. 1. 16., ▲1톤 미만: 2026. 1. 16.

- ▶ 원료 제조·수입품의 제도 이행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유예되었던 ‘중간제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유예기간도 함께 종료됩니다.

* 원료 업체에서 제공받은 MSDS로 중간제품 MSDS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 ▶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화학제품은 유예기간 종료 전(2026. 1. 16.)까지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하며, 2026년 1월 16일부터는 모든 MSDS 대상 물질은 MSDS를 작성·제출하여(MSDS에 제출번호 기재),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9·11조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유예기간 종료

추진배경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2026년 1월 16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유예기간 종료

만료일

2026년 1월 16일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수당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중증장애인의 구직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지원고용 훈련참여 여건 마련을 위하여 2026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의 훈련수당을 인상합니다.

- ▶ 6일 이상 지원고용 훈련 참여시 지급하던 훈련준비금 40,000원과, 1일당 훈련비 18,000원을 통합하여 1일당 35,000원으로 상향 지급
- ▶ (비교) 기본 훈련 일수 16일 기준으로 [기존] 328,000원 → [변경] 560,000원으로 인상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개편내용

구분	현행 지급방식	개선 지급방식
훈련수당(훈련일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일 이상 훈련 참여 시· 훈련준비금 40,000원 지급(1회)· 훈련비 지급(18,000원/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준비금 삭제 및 훈련 일비 35,000원 지급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수당 인상

추진배경

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중증장애인 훈련생의 참여 유인강화 및 안정적인 훈련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인상 추진

주요내용

(훈련수당 인상) 6일 이상 참여시 1회성으로 지급하던 훈련준비금 삭제, 훈련수당(일비) 18,000원에서 35,000원으로 인상

시행일

2026년 1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저소득층 장애인의 구직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 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합니다.

- ▶ 구직촉진수당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장애인에게 지급하며, 매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단가 인상

추진배경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업참여 유인확대 및 든든하고 촘촘한 고용안정망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수당 확대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장애인 중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매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전년대비 월 10만원 인상)
- (지원방법) 구직활동계획 수립 후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지원금 지급
※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응시,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등
- (지원규모) 3,000명

시행일

2026년 1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 ▶ (사업 개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가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지속·확대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장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고용부 인증을 받으면 시설설치비 지원(최대 15억)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 (지원 내용)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원 분야는 표준사업장 생산품 브랜드 개발, 패키지 개선, SNS 마케팅, 수출 컨설팅 등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추진배경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마케팅 지원 통한 매출 증대 및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 (지원방법) 누리집 모집공고 통해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선정기준) 정량·정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 (지원항목) 브랜드 개발, 품질·패키지 개선, 유통채널 구축,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마케팅 등 마케팅·홍보 분야
- (신청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lead.or.kr)

시행일

2026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명단공표 제외 요건을 개선하고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채용 이행 여부에 따른 공표를 강화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노력이 부족한 기업은 구분하여 공표합니다.

- ▶ (제외 요건 개선) 명단공표 기준인원을 달성한 기업은 별도의 제외 요건 없이 공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최고경영자 인사간담회 참석 요건 등 현장 부담이 큰 절차를 폐지합니다.
- ▶ (공표 체계 정비) 3회 이상 연속 공표되거나 장애인 고용인원이 0명인 기업은 명단공표 시 별도로 구분하여 공표하며,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공표에서 제외된 기업이 기한 내 채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하여 공표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의 복잡한 제외 요건과 불필요한 서류 부담 개선 및 공표의 실효성 제고 필요

주요내용

- (제외 요건 정비) 명단공표 기준인원 달성 시 제외 요건 없이 공표 제외, 불이행 해소계획서 및 최고경영자 인사간담회 참석 요건 폐지 등
- (구분 공표 등) 신규 채용 조건 미충족 시 다음 연도 공표 실시, 3회 이상 연속 공표 및 장애인 고용인원 0명 기업의 구분 공표 도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경계선 지능청년*들의 직업 능력을 키우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제공합니다.

* IQ 71~84에 해당하여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적응 능력이 다소 제한됨(전체 인구 중 13.6% 추정)

- ▶ 2026년에는 경계선 지능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 ▶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도 연계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신설

추진배경

경계선지능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직업능력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

주요내용

- (지원대상) 경계선지능청년(20~39세) 200명
- (지원내용) 사업 희망하는 지자체 선정하여 발굴, 상담 및 참여자 특성 고려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 (지원수준) 프로그램 참여시 참여수당 1인 20만원 지급

시행일

2026년 3월(잠정)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7, 7430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창업팀을 선발,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합니다.

- ▶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팀 대상으로 초기창업형·인증전환형·재도전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평균 2천만원~5천만원 규모의 차등 지원 구조로 운영됩니다.
- ▶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창업지원기관을 선정, 상시적·전문적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개요

추진배경

초기창업·인증전환형·재도전형으로 창업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정비해 사회적기업 인증전환과 지속성장 추진

주요내용

-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팀 대상 초기창업형·인증전환형·재도전형으로 구분하여 지원(500팀),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에서 신청
- (운영체계) 전국 17개 권역지원기관(지역기반 일반창업)과 3개 업종 특화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사회적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 044-202-7424/7426

사회적기업 등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유동성 확보를 기여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 ▶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상품에 적용되며,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대출 금리 중 2.5%p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이차보전사업 개요

추진배경

사회적기업 등의 금융비용(대출) 경감(이차보전)을 통한 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주요내용

- (이차보전 금리)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대출금리 중 2.5%p 지원
- (대출자금 용도) 사업 확대를 위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시행일

2026년 2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4,7429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략사업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 ▶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하여, 민간지원기관·사회적기업 등과 통합돌봄, 노동통합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생태계 조성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개요

추진배경

통합돌봄·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사회적기업-민간지원기관 등 협력사업 추진

주요내용

- (사업 내용) 노동통합, 통합돌봄 등 2개 전략사업
 - (노동통합) 사회적기업 등이 민간지원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직업훈련, 멘토링, 채용 등을 제공
 - (통합돌봄) 사회적기업 등이 지자체, 민간지원기관 및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수요를 파악, 맞춤형 돌봄·심리지원 등 제공
- (지원 방식) 비수도권 지자체 공모 선정(14개) 및 매칭 지원(고용부 70%, 광역지자체 30%)

시행일

2026년 2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2, 7426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보상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 가치로 측정·환산하고 그 성과의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 * SVI(Social Value Index):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개요

추진배경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성과 보상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 확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주요내용

- (사업 내용) SVI 양호 등급 이상 평가 기업 우선 선정하고,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화폐로 환산하여 그 일부를 사업비로 지원
 - (성과 보상 기준) 수도권 15%, 비수도권 20%로 차등 상한 적용(+5% 우대)
 - (지원 방식) 매칭 지원(고용부 50%, 광역지자체 50%)

시행일

2026년 2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개편·복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9/7431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 취약계층*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회적기업은 월 50~9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30인 이상 사회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우수”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SVI 평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인건비 지원 개요

구분	SVI 평가 탁월기업	SVI 평가 우수기업	일반기업
지원금액	월 90만원	월 70만원	월 50만원
지원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30인 미만 사회적기업

* 지원요건은 추후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SVI(Social Value Index) 평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배경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및 양질의 취약계층 고용 창출

주요내용

-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수준)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월 50~90만원 지원
- (지원기간) 최대 3년(기본 2년 + 1년(SVI평가 우수 이상))
- (지원규모) 年 5,000여명 예상

시행일

2026년 1~2월 중 공모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다양성) 교육 확대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총괄과

☎ 02-2100-6615

민간부문 성별 다양성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기업 CEO·인사담당자 대상 다양성(DEI)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인식변화와 제도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인사 제도 등 총괄 책임을 지닌 CEO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자원 등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부문의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합니다.

- ▶ 조직 문화가 다양한 기업 규모, 직종(인사실무자·중간관리자·CEO 등) 별로 맞춤형 심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 ▶ 또한, 중소기업의 교육 참여 제고를 위해 “교육 이수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연장 심사 시 가점(3점)”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확대·개선

추진배경

전문인력, 자원 등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심 HR관계자 및 CEO 대상 다양성 제고 교육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 성별 다양성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확산 필요

주요내용

- 민간기업 CEO·인사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 교육 확대
 - (중소기업 참여 확대) (2025년) 360개사 → (2026년) 450개사
 - (교육 확산) CEO 대상 교육 확대 실시, 홍보·네트워킹 지원 담당 자문단(ChangeMakers) 통한 다양성 교육 확산
 - (맞춤형 교육) 기업 규모·업종·직급별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 시행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39

2026년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시·도 및 시·군·구의 참여위원회 등 지역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운영을 지원합니다.

2026년 예산에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예산을 5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앙–지역 참여기구 간 관계망(네트워크) 형성, 참여 청소년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2025년) 3.21억원 → (2026년) 8.25억원(+5.04억원)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추진배경

국가 및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 증진 필요

주요내용

시·도 및 시·군·구 참여위원회 국비 지원으로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청소년 시설 급식 단가 인상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250
☎ 02-2100-6278
☎ 02-2100-6319

청소년들에게 보다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시설의 급식 단가를 인상합니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 시설의 급식비 최소 단가를 1인당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합니다.

※ 운영기관에서 최소 단가 이상으로 급식비 자율 편성 가능

청소년 이용시설 급식단가 인상

추진배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영양과 균형을 갖춘 양질의 급식 제공 필요

주요내용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5천원 → 6천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운영현황: 전국 355개소 /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운영기관 문의

- ☞ 운영기관 찾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 www.youth.go.kr/yaca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교육·진로·자립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

- 운영현황: 전국 222개소 / 이용방법: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 카카오톡 등) 문의

- ☞ 운영기관 찾기: 청소년1388 누리집 www.1388.go.kr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생활지원, 상담, 학업복귀, 취·창업,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 사전 예방과 가정·사회로의 원활한 복귀 지원

- 운영현황: 청소년쉼터 전국 137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13개소 / 이용방법:

-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 카카오톡 등) 문의

- ☞ 운영기관 찾기: 청소년1388 누리집 www.1388.go.kr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51-773-5743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전용계좌를 신설하고 압류를 금지하는 「선원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한 송환비용, 송환수당, 식료품, 물, 연료, 의료지원 등

- ▶ 정부기관의 각종 압류방지 수당의 전용상품인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대상에 유기구제비용등 수급권자가 추가됩니다.
- ▶ 선원들은 유기구제비용등이 적용된 행복지킴이 통장을 운영하는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입금하도록 지급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선원법」 제152조).

*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행복지킴이통장 유기구제비용 추가운영 수요조사 중(11~12월)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추진배경

「선원법」 일부 개정(2026. 3. 17. 시행)을 통해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계좌 신설

주요내용

- 행복지킴이 통장에 유기구제비용 및 재해보상 보험금 수급권자 추가
- 유기구제비용 보장 행복지킴이 통장을 운영하는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지급권자에게 신청

시행일

2026년 3월 17일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051-773-6232

그간 내항선에 승선하는 선원 중 내국인 선원만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동시통역 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외국인 선원도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해 연안~100km까지 전담의료진이 화상통화 형식으로 만성질환 등에 대한 건강상담 또는 부상 시 응급처치 지원

- ▶ 영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인도네이사어 등 다양한 언어(20개국)로 자유롭게 전담의료진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 ▶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는 무료로 24시간 제공됩니다.

해양수산부 누리집>보도자료>“연안 항해 선박에 언제나 원격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잠정)”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추진배경

내항선원의 다수가 외국인 선원인 점을 고려하여, 국내선원 위주의 상담체계를 외국인 선원까지 확대

주요내용

- 연안~100km까지 국내선원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각국의 선원도 부담 없이 전담의료진의 건강상담, 응급처치지원 서비스 이용
- 모든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는 무료로 24시간 제공

시행일

2026년 5월(잠정)

의료기기 변경허가 방식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043-719-3754

**최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의료현장 등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의료기기 변경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 사용목적, 작용원리 등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 사항만 사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외에는 기업 책임하에 주도적 변경·관리가 가능합니다.

안전 우려 등 꼭 필요한 사항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보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의료현장 및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기기 변경허가 방식 전환

추진배경

의료기기의 다양한 기술 요구 및 시장 선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 사전 변경허가 제도로 충족 어려움

주요내용

- (변경관리) '중대 변경 사항*' 외에는 사전 변경허가 없이 업체 스스로 변경·관리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 제조소 소재지 변경·추가, 모양 및 구조, 원리, 원자료, 제조방법, 성능,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 (책임성 부여) 최초 허가 신청 시 변경에 대한 1) 자체 평가·관리 절차를 마련·제출하고, 이에 따라 2) 변경사항 기록·관리 등 준수

시행일

2026년 12월

긴급도입의약품 품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

☎ 043-719-2824

희귀·필수의약품의 긴급도입을 확대를 추진해 환자의 치료권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 ▶ 긴급도입은 국내허가 없이 해외에서만 허가·판매되는 의약품의 의료필수성, 해외 사용현황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결정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직접 의료기관 및 약국에 수입·유통하는 사업입니다.
- ▶ 그간 환자가 직접 자가치료용 의약품으로 구매해온 품목 중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비용부담 완화와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도입의약품 품목 확대

추진배경

환자 비용부담 완화 및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 보장 위한 자가치료용 의약품 긴급도입 의약품으로의 전환 추진

주요내용

- 긴급도입은 해외허가·판매 의약품의 의료필수성, 해외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결정하고 센터에서 직접 의료현장에 수입·유통하는 사업
- 환자가 직접 해외에서 구매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하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

시행일

2026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주문생산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 ☎ 043-719-2825

정부가 추진하는 주문생산 제도 확대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강화하겠습니다.

- ▶ 정부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고 안정공급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시장기능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제약사 생산을 지원하는 주문생산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 2026년부터 공급중단 이력이 있고 보건의료상 필수성이 높은 품목 중 신속 사업진행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주문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일람>공지/공고>공고>"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공고"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 확대

추진배경

필수의약품에 대한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 필요

주요내용

- (주문생산) 채산성 사유로 공급 중단된 국가필수의약품 관련, 국내 제약사와 협의하여 센터에서 생산의뢰 및 구매·유통하는 사업
- (추진방향) 공급중단 이력이 있고 보건의료상 필수성이 높은 품목 중에 신속 사업진행이 가능한 품목을 주문생산으로 우선 추진

시행일

2026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품질시험·분석 서비스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043-719-3310

국내 백신 연구·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병원체 관련 품질시험·분석 서비스를 통해 신·변종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전남 화순)의 고위험병원체 취급 장비·인력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2026년 1월부터 국내 백신 연구·개발 업체에 코로나19·원숭이두창 등 백신에 대한 품질시험·분석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 이러한 서비스 확대로 고위험 감염병 백신의 제품화가 가속화되어 국민 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품질시험·분석 서비스 확대

추진배경

최근 신·변종 감염병 지속 출현에 따라 대응을 위한 국내 백신 연구·개발 관련 업체 품질시험·분석 서비스 지원 필요

주요내용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BL-3) 운영

시행일

2026년 1월(예정)

천연물의약품 안전·품질관리 지원 전담기관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 043-719-3351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천연물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2026년 1월부터 운영됩니다.**

- ▶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천연물의약품의 품질검사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춘 품질검사 연구실, 개방형시험실 및 교육실 등으로 구성되며,
- ▶ 천연물의약품의 안전·품질확보를 위한 검사·연구, 시험법 개발, 관리 지원 및 국내외 규제정보 제공, 컨설팅 등을 통한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국내 천연물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보도자료>“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천연물의약품 안전·품질관리 지원 전담기관 출범

추진배경

천연물 유래 의약품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

주요내용

- 천연물의약품 안전·품질관리 지원, 제품화 기술지원 및 품질검사·연구
- 천연물의약품에 관한 국제기준·제도, 국내외 개발 동향 등의 정보 수집·분석·제공
- 천연물의약품 안전·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시행일

2026년 1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043-719-3412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수출규제 장벽에 대응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 (화장품 안전성 평가)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 ▶ 글로벌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안전성 평가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에 앞서 2026년부터 제도 도입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 ▶ 이에 2026년에는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안전성 정보 DB 구축, 전문인력 교육 등 화장품 업계가 안전성 평가 제도 전 주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K-화장품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배경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수출규제 장벽에 대응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및 전 단계 업계 지원체계* 구축
 - * (제품 개발) 국내외 원료 안전성 정보 DB 구축
 - * (판매 전) ①제품 안전성 평가 컨설팅·상담창구 운영, ②국내 안전성 평가 실시 정보·인력 기반 조성
 - * (판매 후) 제품 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안전정보 관리체계 구축
 - * (전문기관) 안전성 평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전문기관 운영
-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2025년 12월 법적근거 마련, 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
 - 전주기(개발~판매) 업계 지원체계 구축(2026년 1월~)

화장품 할랄인증 등 글로벌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043-719-3403

K-화장품의 할랄*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화장품 할랄인증을 위한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 할랄: 이슬람교 경전에 따라 만들고 먹고 쓰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 ▶ 중소업체가 대다수인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 규제정보 수집에 대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할랄 화장품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 기존의 컨설팅 제도를 더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내실화*하고, 규제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할랄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MRA)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수강자 수준에 따른 초·중·고급 과정의 단계별 교육, 국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국가별 할랄 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컨설팅
- ▶ 이를 통해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할랄 관련 규제 이해도를 높여 K-화장품의 해외 시장 진출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장품 할랄인증 등 글로벌 진출 지원

추진배경

중소업체가 대다수인 화장품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업계에 수출국 규제정보 수집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주요내용

할랄 인증 관련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지원 및 해외 할랄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MRA) 확대 지원 추진 등 할랄 신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시행일

2026년 4월

희귀·난치질환자 필요 의료기기 공급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043-719-3761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요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신속
지정하고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진단·치료에 필요하나 국내 허가·판매되지 않는 의료기를 식약처가 지정하고, 한국의료기기정보원에서 직접 전국 의료기관과 환자에 수입·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 2026년부터 국내 공급중단 예정된 의료기를 신속히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공급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이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를 국가가 책임지고 빠르게 제공하여, 환자들의 적기 치료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함께 의료기기>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주요 사업>안전>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희귀·난치질환자 필요 의료기기 공급 확대

추진배경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신속 지정 절차 개선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적기 치료기회 보장

주요내용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는 국내 허가·판매되지 않는 의료기를 식약처가 지정하고, 한국의료기기정보원에서 직접 전국 의료기관과 환자에 수입·공급하는 사업
- 공급중단 예정된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신속 지정 및 품목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예정)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정비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 043-719-7671

그간 장티푸스, A형간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감염되면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입원·격리치료를 받아야 했던 것이 2026년 1월부터 자가격리 하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10호 개정('25.9.8.)

- ▶ 콜레라를 제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환자는 증상 및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관리합니다.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 다만, 콜레라는 기존과 동일하게 감염 시에는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이며, 전파위험군*에 대한 일시적 업무·등교(원) 제한조치는 유지됩니다.
* 개인위생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자(영·유아 등), 집단급식소 등 식품업객 종사자, 보육시설·요양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유치원생, 학생 및 교사 등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2026년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정비

추진배경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정비

주요내용

(의무입원·격리치료 감염병 정비) 콜레라를 제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5종*이 삭제됨에 따라 자가격리 원칙으로 변경, 전파위험군 일시 업무·등교(원) 제한 조치는 유지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